

소 장

원 고 임 재 성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301호

담당변호사 김 남 주

전화: 02-6925-6004 팩스: 02-6925-0701

E-mail: knj.lawfirm@gmail.com

피 고 국가정보원장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민변 TF'라고 합니다) 및 재단법인 '한베 평화재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민변 TF는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이하 '민간인학살 문제'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변 TF는 내년 한국에서 민간인학살 문제와 관련한 시민법정을 개최할 것을 준비 중에 있으며, 관련하여 민간인학살 생존자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갑 제1호증 2017. 6. 23.자 한겨레신문 기사>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시민법정 첫발 뒀다

민변 변호사 6명, 첫 현지조사
풍니·풍넛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
한베평화재단과 7월 준비위 꾸려
내년 4월 서울 또는 제주도 '시민법정'
"정부 상대 국가배상소송 추진"

"[한국군이] 이모를 살해한 이후에 다 같이 마을을 떠났나요?"

"이모를 (칼로) 찌르고, 주검을 불태우고, 집도 다 태우고 바로 마을을 떠났어요. 오빠는 가어서, 저는 걸어서 이웃집으로 겨우 도망쳤어요."

지난 3일 오전, 베트남 다낭시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응우옌타단(57)이 한국 변호사들의 질문에 답하며 50여년 전 기억을 되듬었다. 왼쪽이 위에 한국군을 피해 숨어 있던 방공호와 집의 위치 등을 그려가며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한 그는 증언 도중 힘겨운 듯 고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베트남 광남성 풍니마을에 자리한 응우옌타단(57) 오빠의 집을 방문해 1968년 풍니·풍넛 학살에 대한 증언을 듣고 있다. 표영은 당시 한국군에 의해 부상을 입고 쓰러진 응우옌타단(57) 오빠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며 증언한 인물이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제공

모와 언니, 남동생 등 가족 5명을 잃었다. 그는 "한국군이 마을에 왔을 때 방공호에 숨어 있었다. 군인들은 방공호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마당에 세웠고, 이후 차례로 총을 쏘았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4~5일엔 하미 마을을 찾아 학살 당시 가족 5명을 잃은 응우옌끼이(72) 등 생존자 4명의 증언을 들었다. 하미 마을은 1968년 2월22일 청룡부대에 의해 민간인 학살 피해를 입은 곳이다. 임재성 변호사는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풍니·풍넛 마을은 상대적으로 많은 증거가 확보돼 진술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뒀고, 하미 마을의 경우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있지 않아 1차 증언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민변 태에프와 한베평화재단은 오는 7월께 시민법정 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베트남 전 종전 43주년인 2018년 4월께 서울 또는 제주에서 시민법정을 열 예정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여성 성노예 동원 책임을 묻기

피고는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원고의 2017. 8. 2.자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위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경위

가. 풍니 사건의 개요 및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위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제1대대 1중대원들(이하 '이 사건 한국군들'이라 합니다)이 1968. 2. 12. '발포제한구역'이던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풍니마을에서 민간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하 '풍니 사건'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한국군들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에게 총을 쏘았고, 그 방법은 칼로 여성의 젖가슴을 도려내거나 어린이의 입에 총구를 겨누었을 만큼 잔혹했습니다(갑 제2호증, 162 내지 171페이지 참조). '풍니 사건'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 이후에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평생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사건 직후 희생자를 수습하였고, 미 해병 제3상륙작전사령부는 당시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몰랜드대장의 지시 하에 '풍니 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월미군사령관 웨스트몰랜드 대장은 1968. 4. 29. 당시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에게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한국군이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여 풍니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191 내지 193페이지 참조). 그러나 채명신 중장은 1968. 6.

4.에 ‘베트남인들이 한국군, 미국군, 남베트남 군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벌인 소행’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194 내지 196페이지 참조).

그러나 한국군의 해명은 ‘퐁니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했습니다.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샘 샤프 대령은 1969. 12. 23. 주월미군사령부 참모장 타운젠트 소장에게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해병에 의한 잔혹행위와 관련하여’라는 비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퐁니 사건’ 직후 이를 목격한 미군들과 남베트남 민병대, 퐁니 마을 주민, 남베트남군 지휘관 등의 진술 내용은 물론 웨스트몰랜드 주월미군사령관과 채명신 장군 간에 오간 편지, 미군이 희생자들을 찍은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갑 제2호증 144 내지 221페이지 참조).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도 ‘퐁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고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었던,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해병 제2여단 1중대 1소대장이었던 최영언 중위, 2소대장이었던 이상우 중위, 3소대장이었던 김기동 중위 등을 소환하여 ‘퐁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중앙정보부는 위 장교들 말고도 하사관, 전역한 병장도 불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한국군들이 스스로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것일 뿐, 당시 중앙정보부가 ‘퐁니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미군이 조사한 결과와 피해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베트남 참전 한국군

이 '퐁니 사건'의 가해자라는 의혹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콩의 소행'이었다고 추상적으로 해명하였을 뿐 의혹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이 1999년경 '퐁니 사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국방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하였으나 겨우 12쪽에 걸쳐 22건의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그쳤습니다(갑 제2호증 245 내지 248페이지 참조). 한 건당 반 페이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 보고서가 과연 정확한 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국으로서 오랫동안 일본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제주4·3, 5·18민주항쟁, 촛불집회 등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해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범죄의 가해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사실이 인정 된다면 진정으로 사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경을 넘은 성숙한 민주화를 이룩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네바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여 '퐁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8. 2.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참조).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9. 11.경 최영언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 전기지사령부 훈련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상우 중위(당시 경남 진해 해병 학교 구대장), 김기동 중위(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 이하 위 3인을 ‘이 사건 피조사자’라고 합니다)를 피조사자로 하여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 소재 풍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피조사자 3인은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략의 내용까지 공개하였 음).

이에 관하여,

- 1)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위 최영언, 이상우, 김기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 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 2) 중앙정보부가 1969.경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문서들의 목록 (이하 위 두 목록을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

을 공개청구합니다.

피고는 2017. 8. 16.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 니다(갑 제4호증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인바, 마땅히 취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서언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고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본문의 적용제외 대상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

유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그렇다면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며 보았을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여야 하고, ②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①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조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중 외교관계에 관련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 관련성이 아주 희박하고, ②비공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가 서류의 '목록'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정보의 당사자들이 조사받은 사실 및 그 내용을 이미 수차례 언론 등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원고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도 않으며, 공개를 통해 그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항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 아님

'국가안전보장'이라 함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이 사건 정보는 ①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이 사건 피조사자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 ②중앙정보부가 1969년 경 풍니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으로 **‘서류의 목록’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가 민간인학살 문제를 조사한 뒤 어떤 제목의 서류를 남겨두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피고가 당시에 어떤 서류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바,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국방에 관한 사항이 아님

한편, 국방(國防)이란 외국의 침략에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서류의 목록’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약 반백년이 다 되어가는 1969. 11.경 이 사건 피조사자들을 조사하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20여년 전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국방·경제 등 다양한 협력을 펼치고 있는 우호국 관계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과 어떠한 분쟁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외국 침략에 대한 대비태세 또는 대한민국 국토방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이 국방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위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통일에 관한 사항이 아님

나아가 통일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인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이 통일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하였다면 그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외교관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인학살 문제란 베트남전쟁기간동안 참전 한국군이 베트남 국적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일응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서류의 목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정보로 인하여 참전 한국군이 베트남 국민을 학살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이하에서 살필 바와 같이 이미 국내 유수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에 언급된 조사를 하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에 아주 희박한 관련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음

(1)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대한민국 이익에 부합하고, 오히려 비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침해될 공익의 부존재).

대한민국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로 다짐하였고(헌법 전문), 외국인에 대해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6조 제2항).

대한민국 정부는 1966년에 ‘전시예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¹⁾에 가입하였고, 동 조약 제146조는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다음 조에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행위²⁾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에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협약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퐁니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민간인을 학살한 국가로 의심 받는다는 것 자체로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국가적 명예가 중대하게 손상되는 것입

1)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대한민국 발효일 1966. 8. 16. (조약 제218호).

2)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피보호자를 불법으로 추방 이송 또는 구금하는 것, 피보호자를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것, 본 협약에 규정된 공정한 정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인질로 잡는 것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불법 및 자의적인 재산의 광범한 파괴 또는 징발

니다. 학살에 관한 구체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이 사건 비공개 처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은폐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 위 조약상 의무의 수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범죄를 은닉하고 비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국가적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추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혹이 지속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학살 의혹을 적극 규명하여야 하며, 학살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고 외교적 이익을 회복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대한민국의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공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침해될 이익의 중대성이 없고, 이익 침해에 현저성이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

로써, 대한민국이 학살 피해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와 같은 이익은 제네바협약상 조사 의무를 위반한 '위법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이익은 '잠정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살 행위가 규명되지 않아서 얻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학살 피해자 또는 베트남 정부가 학살 피해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대한민국이 이에 대응하느라 불필요한 국력이 소비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은 '추상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는 대한민국의 이익은 '위법적', '잠정적', '반사적', '추상적' 이익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이 해쳐질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퐁니 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문서들(신문조서 등)의 목록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중앙정보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퐁니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 정보가 가진 내용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조사자들은 이미 2000.경 「한겨레21」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1969년에 중앙정보부에서 민간인학살문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까지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즉,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호할 비밀가치가 없는 정보라 할 것입니다.

한겨레21 (제306호, 2000. 5. 4.)

양민학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했다

해병 제1대대 1중대 장교들의 최초증언... 후송시킨 민간인 사살 문제되자 박정희 격노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여기는 <한겨레21>입니다. 선생님, 혹시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겨레21> 취재팀의 이 전화 한통이 걸려오는 순간, 그들은 무엇인가를 ‘직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그 일들을 어슴푸레 떠올리기 시작했다.

1969년 11월 어느 날. 해병 제1사단 포항 상륙전기지사령부 최영언 중위(당시 27살)는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는다. “내일 통일호를 무조건 타라.” 대구까지 나와서 군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라는 지시였다. 그 다음날 서울역 앞. 최 중위를 맞이한 사람들은 사복을 입은 해병 헌병대 요원들이었다. 지프를 타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해병대사령부로 간 최 중위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계돼 명동 라이언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그리고 다음날 어디론가 옮겨져 조사를 받는다. 그곳은 남산. 바로 중앙정보부였다.

“월남에서의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밀폐된 방에서 단독으로 마주앉은 중정 조사관이 물었다. 그의 손에는 당시 작전계획서와 전투도가 들려 있었다. 조사관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만은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중앙정보부 조사실에 불려온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조사 도중 화장실에 갔던 최 중위는 뜻밖에 낯익은 얼굴들을 만났다. 중대장 김석현 대위를 포함해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는 물론 선임하사관 등 베트남전 참전 당시의 제1대대 1중대 간부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대부분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부는 제대해 사복을 입고 있었다.

당시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이상우 중위(당시 26살)의 증언. “해병대 사령부에서 무조건 올라오라고 했다. 조그마한 군 트럭을 타고 갔는데 알고보니 남산 중앙정보부였다. 장교 대우를 해쳤고 어려운 것은 없었다. 욕설도 하지 않고 신사적이었다. 조사를 받고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중앙정보부 요원이 '대통령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시켰다'면서 앞으로 군생활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당시 포항 파월특수교육대에 근무했던 김기동 중위(당시 28살)는 조사관이 내밀었던 사진 하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베트남 1번 국도에 주검들이 널려 있는 사진이었다. 우리들이 작전했던 곳에서 미군들이 망원렌즈로 찍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는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 10여명의 장교와 선임하사들을 소환했던 것일까. 1년9개월 전 그들이 베트남의 정글 속에 있던 시절로 돌아가보자.

청룡여단은 1968년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여단 규모로 이른바 '괴룡 1호작전'을 벌였다. 이 작전은 68년 1월30일 월맹군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구정대공세에 맞선 것으로 '구정공세 반격작전'으로도 불렸다. 당시 월맹군과 베트콩이 청룡여단의 주둔지 호이안시는 물론 디엔반 현 등을 공격하자 전 여단이 나서 베트콩 수색 소탕전을 시작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68년 2월12일(음력 1월14일). <파월한국군전사>에 쓰인 당시 작전기록을 보자. "제1중대(장, 김석현 대위)는 08:15에 1번 도로를 정찰하며 북진하고 풍닛(Phung Nhut) 마을에 진입하였다가 공격방향을 서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1:05에 중대의 선두부대는 목표(11-이곳은 지도상 풍니촌에 해당한다)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서쪽지역으로부터 30여발의 적 사격을 받아 4.2인치 박격포로 발사지점을 포격하여 제압할 수 있었으나 중대는 부상자 1명이 생겨 후송하였다."

뱀의 죽음, 그리고 콩볶는 총소리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32년 전의 일. 당시 소대장들은 세부적인 작전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략적인 상황은 또렷이 알고 있었다. 1·2소대장에 따르면 이날 작전과정에서 진입한 마을에서 50~60여명의 아이들과 부녀자, 노인들이 1중대원 누군가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한다. 이상우씨는 당시 마을 이름을 "풍니촌"으로 기억했다.

먼저 당시 1소대장 최영언 중위(58·전 문화방송 스포츠 국장·전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의 기억. 그에 따르면 풍니촌은 '안전마을'이었다. 게다가 미 해병대 캡 소대와 자매결연까지 맺은 마을이었다(캡 소대란 미군이 정보수집을 위해 조그마한 개별 단위부대로 편성한 소대).

베트남전 당시 민간부락은 보통 '자유사격 마을'(free fire zone)과 '안전마을'(control fire zone)로 구분됐다고 한다. 전자는 베트남 거쳐지역으로 추측되는 곳으로서 민간인이건 베트남이건 보이기만 하면 무차별 사격해도 좋은 곳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베트남과 관계없는 민간인들이 사는 곳으로 월남 정부가 공인한 마을이다. 따라서 만약 사격하려면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포 요청을 해도 지원이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 1중대는 1,2,3소대 순으로 1열 중대를 지어 풍니촌 측면을 통과하고 있었다. 위치상으로 보면 다낭에서 남쪽으로 20여km 떨어진 쿠앙남성 디엔반현 디엔안사 부근.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1번 국도에서 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독립부락. 1중대는 애초 풍니촌으로 진입할 계획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로부터 선두 1소대 병력쪽을 향해 사격이 날아왔다. 순간적으로 모든 소대원들이 수풀 바닥에 엎드렸다. 누군가 한명이 총에 맞아 부상한 듯했다. 최영언 소대장은 중대장 김석현 대위에게 긴급히 무전을 쳤다. 중대장의 응답은 마을을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1소대와 2소대가 방향을 왼쪽으로 틀고 총을 쏘며 마을에 진입했다.

베트남군은 이미 자취를 감춘 듯했다. 소대원들은 마을을 뒤졌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모두 어린이와 부녀자 노인들뿐이었다. 최영언씨는 "그들은 겁먹고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고 떠올렸다. 소대원들은 "라, 라이"(오라)라고 말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냈다. 저항은 전혀 없었다. 그는 민간인들을 모두 1번 국도쪽으로 후송을 시키고 마을 끝까지 갔다. 그리고 마을 끝의 밭에서 불길한 예감을 한다. 시야에 큰 뱀이 죽어 있는 광경이 잡힌 것이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입다 총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다. "아이들하고 부녀자 모아놓은 것을 누군가가 사살한 거지..." 최영언씨는 "아마 후미 소대의 어느 분대가 쏜 걸로 언뜻 들었다"고 말했다.

2소대장이었던 이상우(57·부산 동아대 체육대학장)씨의 기억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했다. "1소대와 함께 마을로 진입하니 마을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땅굴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 부상을 입은 이들을 포함해 줄줄이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전부 뒤로 뺐다. 1소대와 2소대가 뒤로 뺀 사람들을 합하면 70~80명 정도 될 것이다. 중대에 보고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는 그날 저녁, 뒤로 후송시킨 사람들을 다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는다.

시체 늘어놓고 통곡하던 사람들

이상우씨는 그 다음날 아침의 일이 너무 생생해 잊을 수 없다고 했다. 2소대가 1번 국도 정찰을 나가서 목격한 스산한 풍경들 때문이다. 베트남 민간인들이 1번 국도 서쪽, 풍니촌편 도로변에 가족들의 시신을 가마니 등으로 덮어놓고 통곡하고 있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잡아 40~50구는 됐다고 한다. 원망스런 눈길로 한국군을 쳐다보고 있었다. 2소대가 지나가자 베트남 민간인들은 울음을 그쳤다. 민간인들 틈에서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 그는 소대원들에게 바짝 경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언뜻언뜻 그들을 보면서 그는 “어제 저녁에 들은대로, 뒤로 뺀 사람들을 모두 썩 버렸다는 말이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했다.

1·2소대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후미 소대가 민간인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두 소대장의 일치된 말처럼 “1번 국도 쪽으로 후송시켰다”면, 베트남 민간인들은 3소대 병력과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3소대장 김기동(59·사업)씨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 인간의 간격이 5m다. 1개 소대의 길이만 200m가 되는 셈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대장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는 “앞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부락이 불타는 게 보였다”면서 “서너구의 시체와 닷명의 부상자들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지나쳐 갔던 게 생각날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줄 마지막 장교는 중대장이다. 76년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는 김석현씨의 연락처를 어렵사리 수소문해 전화통화에 성공했다. 그는 취재팀의 질문에 일부는 응답하면서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답변할 가치가 없다”면서 피해갔다. “누가 죽였습니까.” “산개해서 전투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액션(개인행동)밖에 안 된다. 난 모르겠다.” 그는 악몽을 떠올리기 싫다고 했다. “우리 아이들은 전쟁을 겪게 하기 싫어 이민을 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나이가 먹으니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 비록 언성을 높였지만. “내가 조사관들한테 그랬지. 도대체 명령권자가 누구냐,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대통령 아니냐고 따졌지.”

“조기귀국? 잘 모르겠다”

(사진/69년 11월26일치 <동아일보>1면. 중앙정보부의 조사 이후 발표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파월한국군전사>에 따르면, 김석현 중대장은 67년 11월20일부터 68년 3월2일까지 베트남에서

근무했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 보통의 베트남전 복무기간이 1년인데 반해 그는 왜 3개월13일 밖에 안 했을까. 부상당한 것도 아닌데... 다시 2소대장 이상우씨의 증언. “김석현 중대장은 그 사건 때문에 1주일쯤 뒤에 조기귀국했다. 나도 베트남에서 조사받았다. 청룡여단 헌병대쪽에서 조사관이 나왔다.”

그러나 김석현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기귀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했다. “잘 모르겠네. 그거야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러나 또다른 증언은 그가 이 사건으로 조기귀국했음을 분명히 증명해준다. 68년 봄 해병1사단 파월특수교육대 교관을 지냈던 김석현씨 선배장교의 말이다. “3월인가, 석현이가 나 있는 곳으로 부임해 왔더라고 그래서 물었지. 너는 베트남에 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벌써 왔냐고 그랬더니 머리를 굵적굵적 해. 나중에 알아보니 안전마을을 싹쓸이 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의 증언을 부연하면 이렇다. 디엔반현 풍니촌 사건이 일어난 직후 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이 월남 정부에 접수되면서 이 문제는 한-베트남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된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월남 정부쪽의 요구가 들어오자 난처해진 주월한국군사령부는 “귀국 때가 됐다”고 둘러대며 김석현 대위를 조기귀국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는 왜 굳이 1년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을 조사했을까. 69년 11월 당시는 미국 내에서 밀라이 사건이 크게 보도될 때였다. 지휘관 켈리 중위가 재판을 받고 이에 대한 미국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베트남전 반전 데모도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티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국의 한 신문에 보도됐다. 이걸 그야말로 ‘제2의 밀라이’로 불릴 만했다. 박정희는 대노하여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다.(미국언론의 보도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장교들과 하사관들에게 “중정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우씨는 지금까지 부인에게도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최영언씨 역시 이 사건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32년 만에 그 일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 정보의 작성시점을 고려할 때, 공개의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외교부령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30년에서 5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공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가 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30년~5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문서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상당하다는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정보는 1969.경 작성되었는데, 2017. 현재를 기준으로 50여년 가까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현재 시점에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 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 필요성과의 형량에 있어서 공개 필요성이 월등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는 1999년경 국내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약 18년간 민간인학살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사회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향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책임을 요구한다면, 마땅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과 진상규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정보는 풍니 사건에 관한 것인데, 풍니 사건의 경우 주월미군 감찰부의 조사에서도 학살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일관되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의심되는 정황이 오랜 시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에의 필요성은, 이미 공개된 조사사실인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예상되는 국가이익보다 월등히 크다 할 것입니다.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보의 형식과 내용을 감안할 때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피고는 비공개사유가 전혀 없고, 비밀가치 역시 없는 정보까지 과도하게 비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한겨레, ‘베트남 학살 피해자를 위한 시민법정’ 첫걸음
내딛어, 2017. 6. 23.
- 1. 갑 제2호증 고경태, 한마을이야기, 2016
- 1. 갑 제3호증 한겨레21, ‘양민학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했다’, 2000. 5. 4.
- 1. 갑 제4호증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2017. 11. 3.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 남 주

서울행정법원 귀중